공정배상기금법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82 발의연월일: 2025. 4. 9.

발 의 자: 박상혁 • 박용갑 • 김한규

이해식 • 양부남 • 강준현

노종면 • 정일영 • 김주영

최기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 내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매도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9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정배상기금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상품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배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에 따른 과징금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제1항 및 제4 항에 따른 과징금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과징금

- 5. 기금의 운용수익금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에 사용한다.
 -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 된 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투자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제429조의3 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 실이 입증된 투자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 3.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관리 · 운용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공정배상기금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2.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3.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공정배상기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공정배상기금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금융 관련 단체의 관계자가 아닌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③ 공정배상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 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 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별로 계정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수 있다.
- 제13조(취소·환수) 금융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